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제 1390 호 2023. 3. 9.(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48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55호[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안정 의제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5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62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44호선 외 2개 노선, 주차장,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63호[2023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공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6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3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71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87호[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공고]..... 8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1

| | |
|-----|---|
| 안 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 | | | | | | | | |
|---|--|--|--|--|--|--|--|--|
| 회 | | | | | | | | |
|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4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 도로명주소 | 소재지 지번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 사유 |
|------------|---------------|-------------|--------|
| 진장12길 10-1 | 진장명촌지구 57B 2L | 2023. 3. 9. | 건축물 멸실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355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화성스포츠타운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화성스포츠타운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38, 외 12필지 (연암동)

나. 성 명 : 화성스포츠 대표 이동식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부지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6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사업면적(m ²) | 공장용지(m ²) | 도 로(m ²) | 비 고 |
|-----------------------|-----------------------|----------------------|-----|
| 14,069 | 13,689 | 380 | |

4. 사업시행기간 : 2019. 11. 7. ~ 2024. 8. 31.

5. 열람내용 :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내용

6.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청 산단개발과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7.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3. 3. 3. ~ 2023. 3. 17. (14일간)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개별우편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시 별도 양식은 없으며,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청 산단개발과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팩스번호 : 052-229-4379, 052-241-7909

라. 기 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붙임참조”

9.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계재생략”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산단개발과(052-229-43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 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또는명 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 | 울산 북구 연암동 | 655-4 | 답 | 125 | 125 | 이○○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1-9 | | | | |
| 2 | 울산 북구 연암동 | 655-5 | 답 | 94 | 94 | 이○○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1-9 | | | | |
| 3 | 울산 북구 연암동 | 656-1 | 전 | 57 | 57 | 이○○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1-9 | | | | |
| 4 | 울산 북구 연암동 | 657-5 | 대 | 280 | 280 | 윤○○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57-5 | | | | |
| 5 | 울산 북구 연암동 | 657-6 | 대 | 88 | 88 | 김○○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57-6 | | | | |
| 6 | 울산 북구 연암동 | 657-7 | 대 | 95 | 95 | 이○○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41-13 | | | | |
| 7 | 울산 북구 연암동 | 657-8 | 대 | 810 | 810 | 최○○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57-8 | 울산축산업 협동조합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18-2(남산지점) | 근저당권자 | |
| 8 | 울산 북구 연암동 | 657-18 | 대 | 11 | 11 | 김○○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57-6 | | | | |
| 9 | 울산 북구 연암동 | 657-19 | 대 | 174 | 174 | 김○○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63(연암동) | | | | |
| 10 | 울산 북구 연암동 | 658-1 | 도 | 34 | 34 | 이○○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90번길53, 107동 304호(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울산병영지점) | 근저당권자 | |
| 11 | 울산 북구 연암동 | 660 | 답 | 279 | 279 | 이○○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90번길53, 107동 304호(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울산병영지점) | 근저당권자 | |
| 12 | 울산 북구 연암동 | 660-3 | 답 | 6 | 6 | 주식회사 한국자산 개발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6 | 국(동울산세 무서) | | 압류 |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 | 압류 | |
| | | | | | | | | 주식회사 다임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53-4 3층 | 근저당권자 | |
| 13 | 울산 북구 연암동 | 825 | 답 | 4,159 | 4,159 | 이○○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90번길53, 107동 304호(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 | | | | |
| 14 | 울산 북구 연암동 | 827-6 | 답 | 7,512 | 7,512 | 이○○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90번길53, 107동 304호(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울산병영지점) | 근저당권자 | |
| 15 | 울산 북구 연암동 | 827-17 | 도 | 31 | 31 | 이○○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90번길53, 107동 304호(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울산병영지점) | 근저당권자 | |
| 16 | 울산 북구 연암동 | 827-18 | 답 | 175 | 175 | 이○○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90번길53, 107동 304호(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울산병영지점) | 근저당권자 | |
| 17 | 울산 북구 연암동 | 1342-33 | 도 | 126 | 126 | 국(건설부) | | | | | |
| 18 | 울산 북구 연암동 | 1342-61 | 도 | 13 | 13 | 국(건설부) | | | | | |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 | | | |
|--------|--------|-----|--|
| 1. 제출인 | 주소 | 연락처 | |
| | 성명(명칭) | | |

2.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3. .

의견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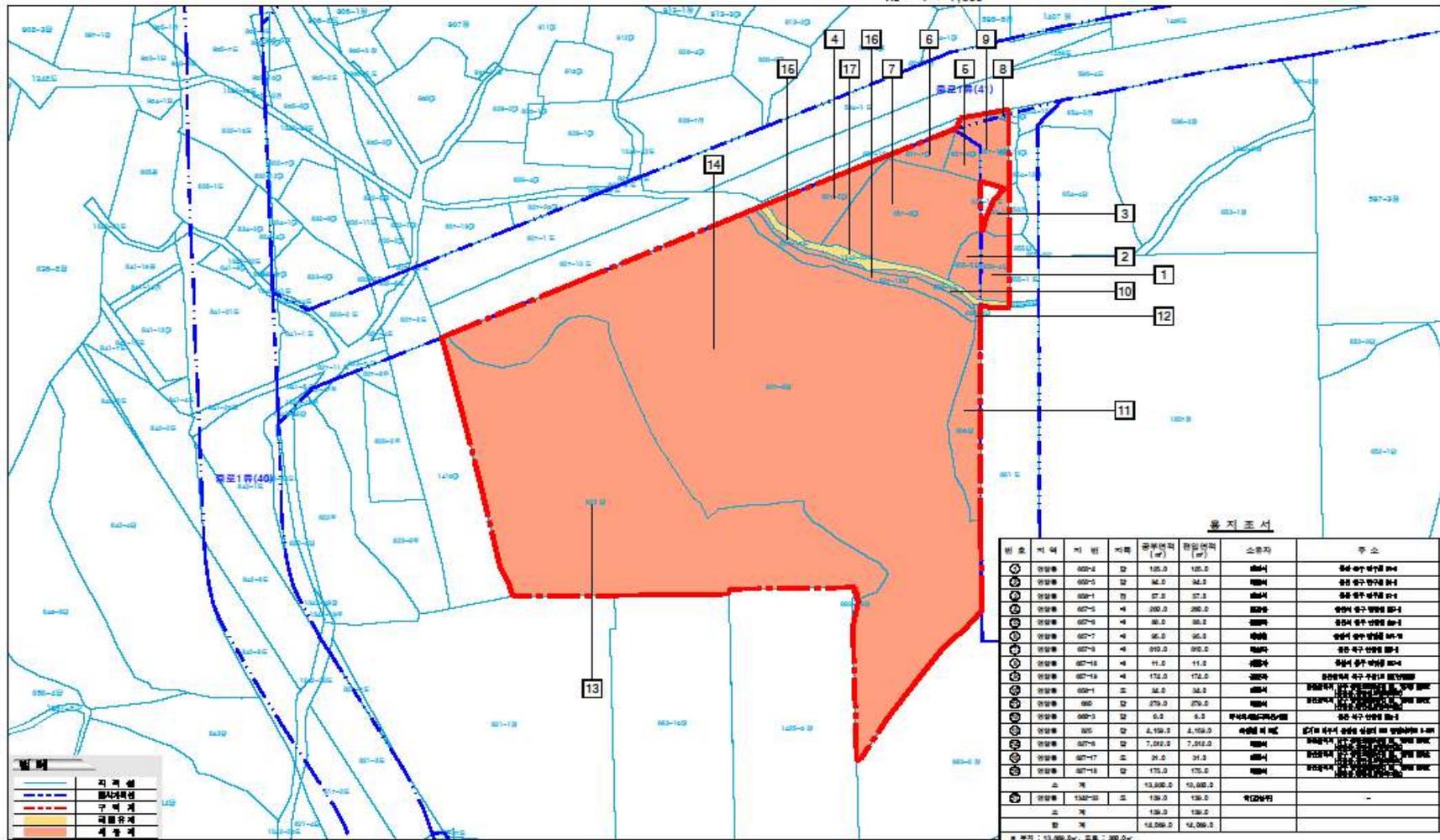
성 명(명칭)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산단개발과 귀하

용 지 도

SCALE A1 = 1 : 500
A3 = 1 : 1,000



A1=1:500
A2=1:1,000

용 지 조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35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천곡동과 달천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천곡동 23필지(54,270㎡)를 달천동으로 편입(안 별표 2)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66,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 |
|---|---|-----------|--|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 | |
| 2023년 월 일 | | | |
| 제출자 | | (서명 또는 인)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1. 개정이유

-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천곡동과 달천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천곡동 23필지(54,270㎡)를 달천동으로 편입(안 별표 2)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3월 예정

바. 입법예고 : 2023. 3. 9. ~ 3. 29.(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란 다음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10 | 천곡동 914-2, 914-5, 914-9~10, 954-1~2, 954-6. 955, 955-1, 1024-71, 1100, 1100-1, 산151-9~12, 산152-1, 산153, 산153-2, 산154-1, 산154-4, 산155, 산155-2번지(54,270제곱미터)를 달천동으로 편입한다.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개 정 안 | |
|-------------------------------|-------|-------------------------------|--|
|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 |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 |
| 연번 | 변경내역 | 연번 | 변경내역 |
| 1 ~ 9 | (생 략) | 1 ~ 9 | (현행과같음) |
| <신 설> | <신 설> | 10 | <u>친곡동 914-2, 914-5, 914-9~10, 954-1~2, 954-6. 955, 955-1, 1024-71, 1100, 1100-1, 산151-9~12, 산152-1, 산153, 산153-2, 산154-1, 산154-4, 산155, 산155-2번지(54,270제곱미터)를 달천동으로 편입한다.</u>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쳐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3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44호선 외 2개 노선, 주차장,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44호선 외 2개 노선, 주차장,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44호선 외 2개 노선, 주차장, 어린이공원)사업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44호선 외 2개 노선, 주차장, 어린이공원)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11-1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 구분 | 등 급 | | | | 연 장(m)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신설 | 소로 | 1 | 144 | 10(10) | 43(43) | - |
| 기정 | 소로 | 2 | 347 | 8 | 273 | - |
| 변경 | 소로 | 2 | 347 | 8(8) | 275(2) | 노선연장(2m) |
| 신설 | 소로 | 2 | 658 | 8(2) | 26(26) | 노선확폭(2m) |

※ ()는 사업시행자가 개설할 연장 및 폭원 임.

나. 소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조성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m ²) | 비고 |
|----|------------|-------|-----------------|----------------------|------|
| 기정 | 216 | 주차장 | 북구 중산동 1311-1일원 | 800 | - |
| 변경 | 216 | 주차장 | 북구 중산동 1311-1일원 | 890.8 | 증)90 |
| 기정 | 361 | 어린이공원 | 북구 중산동 1312-1일원 | 3,341 | - |
| 변경 | 361 | 어린이공원 | 북구 중산동 1312-1일원 | 3430.4 | 증)89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나.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5. 사업기간: 인가일 ~ 2025. 02. 28.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8. 열람기간: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9.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 번호 | 지번 (중산동) | 지목 | 지적 면적 | 편 입 면 적 | | | | | | 소 유 자 | |
|----|-------------|----|----------|---------|--------|--------|-------|---------|---------|----------------|-----|
| | | | | 소1-144 | 소2-347 | 소2-658 | 주차장 | 어린이공원 | 계 | 성 명 | 주 소 |
| 1 | 1311-1 | 차 | 462.1 | | | | 462.1 | | 462.1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2 | 1311-2 | 대 | 47.3 | | | | 47.3 | | 47.3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3 | 1311-3 | 대 | 16.9 | | | | 16.9 | | 16.9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4 | 1311-8 | 대 | 96.4 | | | | 96.4 | | 96.4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5 | 1311-9 | 대 | 268.1 | | | | 268.1 | | 268.1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6 | 1311-10 | 차 | 241.4 | 241.4 | | | | | 241.4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7 | 1311-11 | 차 | 96.5 | | | | | 96.5 | 96.5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8 | 1311-12 | 대 | 150.2 | 150.2 | | | | | 150.2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9 | 1311-13 | 대 | 70.5 | | | | | 70.5 | 70.5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10 | 1311-14 | 대 | 53.6 | 53.6 | | | | | 53.6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11 | 1311-15 | 대 | 25.0 | | | | | 25.0 | 25.0 | 울산광역시 (교육감) | |
| 12 | 1312-1 | 공 | 2,854.4 | | | | | 2,854.4 | 2,854.4 | 울산광역시 북 구 | |
| 13 | 1331 | 도 | 384.0 | | | | | 384.0 | 384.0 | 울산광역시 북 구 | |
| 14 | 1331-1 | 도 | 1.4 | 1.4 | | | | | 1.4 | 울산광역시 북 구 | |
| 15 | 1337 | 천 | 536.6 | | 15.8 | 46.8 | | | 62.6 | 울산광역시 | |
| 계 | | | 5,304.4 | 446.6 | 15.8 | 46.8 | 890.8 | 3,430.4 | 4,830.4 | | |

붙임1 2023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공고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63호

2023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2023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명 : 2023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 10. 31.
3. 총사업비 : 9,200만원
4. 사업유형 : 4개 분야

| 구분 | 사업내용 | 응모자격 | 지원금액 | 자부담 |
|-------------|---|---------------------------------|----------------------|------------|
| 든든한 이웃만들기 |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 북구 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공동체 | 4개소 정도 (최대 2,000천원) | 자율편성 |
| 소소한 동네만들기 |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 북구 주민 5인 이상의 공동체 | 8개소 정도 (최대 5,000천원) | 지원금의 5%이상 |
| 통통한 마을만들기 |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활동 | 북구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 | 3개소 정도 (최대 8,000천원) | 지원금의 10%이상 |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활동 | 북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 | 2개소 정도 (최대 10,000천원) | 지원금의 10%이상 |

4-1 사업유형의 예시

| | |
|-------|---|
| 기록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원조사, 마을해설사 양성 등 마을알리기 관련 사업 ○ 마을지도(문화, 예술, 안전 등 분야 맞춤형 지도) 만들기 ○ 이웃들과 우리동네 곳곳을 담은 마을미디어(신문, 방송 등) 사업 |
| 문화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전시(마을의 다양한 문화예술 등 주민참여) 기획 및 진행 ○ 마을의 특색이 드러나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기획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마을축제 등의 행사 |
| 교육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공동육아 등 마을의 육아 환경 개선 활동 |
| 환경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사이클링, 에너지 절약 등 환경 관련 사업 |
| 안전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생각하는 셉테드, 마을 방법 등 마을 안전 |
| 인권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공동체 접근성이 낮은 이웃들과의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
| 경제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나의 필요 및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사업 |

5. 신청제한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시비·구비)을 지원 받는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
|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단체 | 전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후 중도포기 단체 |
| 단체 고유사업 | 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ex.주민자치위원회 경로잔치 등) |
| 일반 강좌 운영 | 직업훈련, 어학, 교과목 특기적성, 정보화 교육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 |
| 일반 단순 모임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 일회성 사업 | 일회성 행사 및 축제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 하는 모임 |
| 단순 복지 사업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도시락(반찬) 배달, 김장김치 전달 등 |
|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 |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특정 종교 교리 전파 |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여 주민(마을)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모임에서 끝나는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볼 수 없음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은 최근 2년 이내 동일한 사업으로 공동체 사업 이력이 있어야 하며 향후 2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필수 | |

6. 접수기간 : 2023. 3. 27.(월) 09:00 ~ 3. 31.(금) 18:00

○ 사업신청 전 컨설팅 신청 필수

7.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방문 및 우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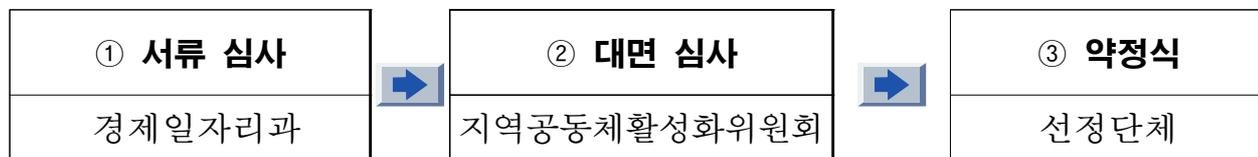
- 이메일(kyj0728@korea.kr)로 신청서류 한글파일 제출 필수

8.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 사업신청 전 컨설팅 신청 필수
- 사업계획서(서식2)
- 단체소개서(서식3)
- 참여자 서명부(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5)

9. 심의 및 선정

- 심의절차



※ 신청사업 설명자 1인 필참

- 선정방법 : 배점표에 의거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적합 판정(단 사업별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 적합판정 단체 중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붙임4】세부항목별 평가 기준표 참고
 - 필요성, 공익성, 현실성, 공동체성, 예산적합성, 민관파트너십

10.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제출

11. 선정단체 의무사항

- 교육사업 전반
- 협약 체결 후 5일 이내 자부담 전용 통장에 해당 자부담 비용을 입금해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울산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함

12. 추진일정

| | |
|-----------------------|-----------------|
| ○ 마을만들기 사업 사전컨설팅 | 3. 13. ~ 3. 31. |
| ○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및 사전컨설팅 | 3. 27. ~ 3. 31. |
| ○ 심의 및 선정, 약정 | 4월중 |
| ○ 보조금 교부 | 4월중 |
| ○ 사업 실행 | 4월~10월 |
| ○ 마을만들기 기초 및 심화 교육 | 5월중 |
| ○ 사업 중간점검 | 7월중 |
| ○ 사업 수행 모니터링, 사업중 컨설팅 | 수시 |
| ○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성과공유회 | 11월중 |
| ○ 사업 정산 및 사업후 컨설팅 | 12월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고지 예정

13.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보조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
 - 보조금 중복지원 받은 경우 등

14.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241-7279)

붙임2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표

| 심의 항목 | | 세부 내용 |
|------------|----------|--|
| 사 업 타당성 | ①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발전에 적합한 사업 -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 - 사업 추진 후 마을의 변화 가능성 - 각 사업 분야별 마을 필요성과 적합성 -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사업 |
| | ②공익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 질 향상 가능성 - 소규모 친목관계가 아닌 외부 이웃에 대한 파급 효과 |
| 사 업 실행력 | ③현실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배경 및 사업 목표의 구체성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효과를 파악 -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상담 이행 여부 |
| | ④공동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자 간의 일상적 소통 정도 - 사업 운영자 간의 업무분장 및 협력 정도 - 모임 구성원들의 참여도, 자발성 - 모임 운영의 민주성 및 지역사회 문제 관심도 |
| | ⑤예산적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자부담 비율 |
| | ⑥민관 파트너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 가능성 - 보조금 회계처리 역량 및 마을공동체 교육·행사 참여도 |

붙임3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I 기본원칙

1.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사무용품 구입비 등 단체운영비
 - ※ 단, 개별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로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지원 가능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포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2. 공익활동 지원의 실행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자부담 포함)
- 식비, 강사료, 회의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집행지침 반드시 준수

3. 포괄적인 예산편성 사양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각각 제시해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보조금은 사업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실질적인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대적 경비(식비, 다과비 등)는 가급적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5.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 시 동일한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 할 수 없다.

예시) '○○○ 홍보전단지 제작'에 소요되는 홍보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홍보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홍보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II 회계처리 기준

1.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1개 사업 1통장 원칙, 지원 사업 2개인 경우 통장 및 카드 2개 사용
- 법인은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로 통장개설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만 계좌입금 가능(현금 지급 불가)
 -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 및 공공요금(우편요금 제외)만 계좌 이체 인정
- 기존에 개설되어있는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을 "0"으로 정리하여 사용
 - ※ 단, 자부담 금액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입금완료 후 통장 제출

2. 지출품·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지출품·결의서 작성, 대표자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관리 철저
 -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지출일자, 상호명 일치
 -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 방식 금지

3. 보조 교부결정 이전 집행한 사업비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구청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4. 사업계획서상 계획대로 집행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첨부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
 - 정산 시 사업집행계획과 대비 정산검사 실시
- 보조금 예산 신청 시 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 시 계획이 상이한 경우 허위·부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간주, 환수 조치 대상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구청장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조치

5. 각종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문의

6.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연도 내 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종료일(10.31)까지 집행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7.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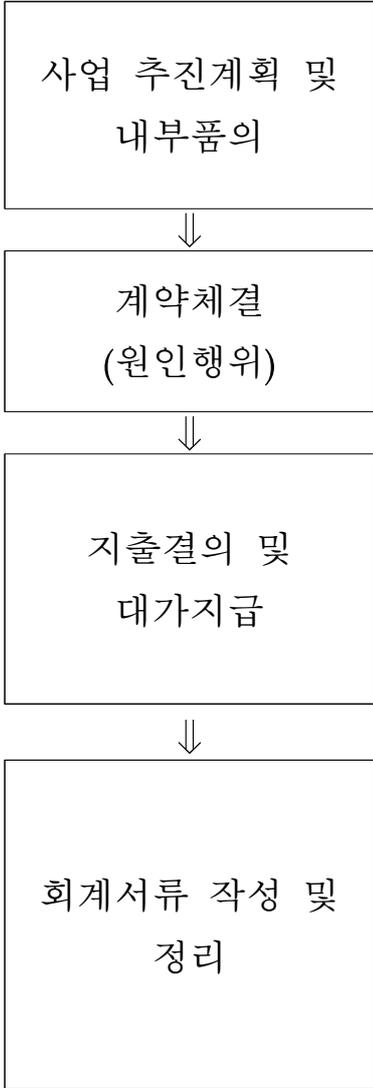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기준 미준수 시 다음해 지원 제외 및 패널티 적용

8.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 절감 노력

-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및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

9. 사업비 집행순서



- '집행계획서(내부결재)' 또는 '지출품의서'
- 각종 항목(금액)에 대해 사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결재를 득함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지출품의 범위(금액)를 벗어난 집행은 불가

-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조건·기간·상대자 등을 표시하여 작성
-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같음

- '지출결의서'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 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채주에게 대가 지급
- 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물품영수증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서, 통장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등 첨부

- 사업별 회계장부 관리
- 증빙서류 구비(물품견본 또는 사진, 지급내역, 물품배부내역, 참석확인서, 회의록, 행사사진 등)
- ※ 캠페인 등 행사 관련 지출시 구비서류
 행사계획서(사업개요, 장소, 인력, 추진방법), 캠페인참여 확인서 등 추가

III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사업비 집행 기준표(요약)>

| 비 목 | 기 준 | 지출 한도액(원) | | 비 고 |
|-------------------|--|---------------|------------|---|
| 강 사 료 | ◦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 | |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 지급 불가 |
| 홍 보 비 |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 현수막(표준형) | 개당 50,000 | ◦ 100만 원 이상 지출 시 타건적서 첨부 |
| | | 현수막(대형) | 개당 100,000 | |
| | | 배너 | 개당 50,000 | |
| | | 피켓 | 개당 30,000 | |
| | | 어깨띠 | 개당 3,000 | |
| | | 전단지,리플릿,포스터 등 | 장당 500 | |
| 인 쇄 비 |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 | | | ◦ 컬러 인쇄 지양, 양면인쇄 원칙 ◦ 100만 원 이상 지출 시 타건적서 첨부 |
| 차 량 임 차 료 | ◦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 관내 | 대당 400,000 | |
| | | 관외 | 대당 800,000 | |
| 장 소 임 대 료 | ◦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 체결 | | | ◦ 가급적 공공시설 활용 |
| 식 비 | ◦ 1인 / 1식당 8,000원 | | | ◦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식비로만 사용가능 ※ 회의·행사 후 내부 회원 식사 등에 지원 불가 |
| 다 과 비 | ◦ 1인당 3,000원 | | | ◦ 각종 행사,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구입비 |
| 물 품구입비 (재료비 등) | ◦ 시장시세 적용 (예. 행사용 소모품, 진행용품, 물품 구입 등) | | | ◦ 50만 원 이상 지출 시 타건적서 첨부 |

※ 표에 없는 비목에 대한 집행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

1. 강사료

-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수하되, 관외에 거주하는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 외 교통비 등 지급 가능
 - ※ 강사료 이외 교통비 등에 대한 별도 서류증빙 철저
- 강의확인서(강의일시·장소·주체, 강사 인적사항, 입금계좌 정보 등),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사진 등 필수 첨부
- 관련세법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및 납부 철저

2.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품(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비

3.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의 인쇄물 제작비
- 인쇄비는 가급적 정부인쇄기준 요금을 적용하고, 제작부수는 배부처와 참석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하게 인쇄되는 사례를 방지
- 재질은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를 사용하고, 고급표지 등은 지양
-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 배포처 | 배포수량 | 배포방법 | 비고 |
|---------|------|------|-------------|
| 계 | 150 |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
| 교육 참석자 | 50 | 현장배포 | 참석인원과 일치 |
| 관련 행정기관 | 40 | 우편송부 | 기관 명시 |
| 자체보관 활용 | 10 | - | 활용목적 기재 |

4. 식비 및 다과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
-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회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 등의 단순 참석자에 대한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 참석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참석자 명단(참가자 등록부)을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 연 번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참석자 서명 |
|-----|-----------|-------|--------|
| 1 | OO단체 회장 | 강 O O | |
| 2 | OOOO단체 총무 | 이 O O | |

- 1인 1식 8,000원 단가 기준 적용

- 간식비는 사업(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1인 3,000원 단가 적용
- 증빙서류는 수기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불가

8.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용, 재료비 등
- 반드시 물품구입내역서 구비, 배부용일 경우 배부내역서 첨부

| 배포처 | 배포수량 | 배포방법 | 비고 |
|---------|------|------|-------------|
| 계 | 150 |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
| 교육 참석자 | 50 | 현장배포 | 참석인원과 일치 |
| 관련 행정기관 | 40 | 우편송부 | 기관 명시 |
| 자체보관 활용 | 10 | - | 활용목적 기재 |

9. 기타사항

- 특이사항으로 인해 각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사전 논의 필수

10. 주요 비목별 구비서류

기본 서류

1. 지출품의서
2. 지출결의서
3. 각종 증빙영수증[카드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추가 서류

| 지출항목 | 구비서류 |
|-------|---|
| 인쇄비 | 타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쇄물 샘플, 인쇄물 배포내역 등 |
| 회의비 | 회의비지급내역서, 참석확인서, 회의록, 회의사진, 이체확인증 |
| 강사료 | 강사료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이체확인증, 강의사진 등 |
| 단순인건비 | 근무(활동)일지, 참여확인서,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 식비 | 증빙사진, 식사 참석자명부 등 |
| 홍보비 | 타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명세서, 홍보물 샘플 등 |
| 임대성경비 | 임대(임차) 계약서류, 이체확인증, 임대 및 행사사진 등 |

[서식 2]

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단체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이름(사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2. 사업 대상 ※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마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작성해주세요.

3. 신청배경 및 사업목적 ※ 사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와 이 사업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해주세요.

배경 : 왜 신청하게 됐는지, 왜 이게 필요했는지

요약 :

-

-

목적 : 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요약 :

-

-

4. 당해연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 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 행사 날짜 등을 대략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단위사업명 | 일시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 | 6월 매주 화요일 | - 장소 : - 대상 : - 참여인원 : - 추진내용 : |
| | 7월 | |
| | 9. 12.(일) 10시~12시 | |
| | 10~12월 | |

5. 성과목표

< 성과 목표치 설정 >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
| | 구분 | '23 | '24 | |
| (예) ◦ 프로그램 운영률 ◦ 프로그램 참석률 ◦ 프로그램 개최율 등 | 목표 | | | (예) ◦ 이용인원/운영계획*100 ◦ 참여인원(명)/계획인원(명) ◦ 개최횟수/개최계획 등 |
| | 실적 | | | |

6. 중장기 사업 계획

| | |
|---------|--|
| 최종 목표 : | |
| 3차년도 | |
| 2차년도 | |
| 1차년도 | |

7. 예산계획

○ 사업비 구성

| | | | | |
|------|----------|---|--------------|---|
| 예산구성 | ① 신청 금액 | 원 | 총 사업비 ①+② | 원 |
| | ② 자부담 금액 | 원 | | |

○ 단위사업별(비목) 산출내역

| 세부사업명 | 비목 | 산출근거 | 예산액(원) | 재원 | | 비고 |
|----------|-----|-----------------------------|-----------|-----------|-----------|----|
| | | | | 보조금 | 자부담 | |
| 합계 | | | 3,545,000 | 3,245,000 | 300,000 | |
| 1. _____ | 식비 | 8,000원x10명x3회 | 240,000 | 240,000 | | |
| | 강사비 | 2급강사(2시간)*5회 | 1,050,000 | 1,050,000 | | |
| 소계 | | | 1,245,000 | 1,245,000 | | |
| 2. _____ | 재료비 | 5,000원x20명x10회 | 1,000,000 | 1,000,000 | | |
| | 임차비 | 1,000,000원x1식 (사전견적서 받기) | 1,000,000 | 1,000,000 | | |
| | 활동비 | 9,000원x2시간x10회 | 180,000 | 180,000 | | |
| 소계 | | | 2,300,000 | 2,000,000 | 3,000,000 | |

8. 수입금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사업명 | 수입금 (단위:천원) | 수입내역 | 비고 |
|-----|----------------|------|----|
| | | | |
| | | | |

[서식 3]

단체 소개서

| 단체명 | | | |
|---|-------------------------------------|-----|--|
| 활동분야 | | 결성일 | |
| | | 회원수 | |
| 모임배경 및 활동 목적 | ① 모임배경 - - - - - | | |
| | ② 모임 활동 목적 - - - - - | | |
| 주요연혁 및 활동사항(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 | | |
| 기간 | 활동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대표자 | | (인) | |

[서식 4]

참여자 서명부

| 연 번 | 참여자 인적사항 | | | | 담당 | 서명 |
|--------|----------|----|-----|-----|----|----|
| | 이름 |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 |
| 1 | | | | | 대표 | |
| 2 | | | | | 총무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페이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 작성

[서식 5]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는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울산 북구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활동사진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울산 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2년까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활동사진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대상자 선정심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지방보조금 신청시~보조금 집행 완료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 | |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서명)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서명)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서명)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서명) |

붙임5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지급기준**(’23. 1. 31.부터 적용)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 등급 | 적 용 대 상 (전·현직 동일 적용) | | 지급액(만원) | |
|-------|---|--|-----------|---------|
| | 공직분야 | 민간분야 | 최 초 1시간 | 초 과 매시간 |
| 특1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 대학총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40 | 30(20*) |
| | | | 이동시간수당 30 | |
| 특2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언론사 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30 | 20 |
| | | | 이동시간수당 20 | |
| 일반 1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5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 의원(의장 포함) · 대학교수, 판·검사 · 학교법인 대표 및 각 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 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사 임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 예술인, 종교인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 기업, 기관, 단체의 임원, 중역 · 컨설턴트 대표(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민간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25 | 12 |
| | | | 이동시간수당 12 | |
| 일반 2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 강사 등 · 학교법인 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 중소기업 임원, 일반 컨설턴트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15 | 8 |
| | | | 이동시간수당 8 | |
| 일반 3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전산 강사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10 | 5 |
| | | | 이동시간수당 5 | |
| 일반 4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8 | 4 |
| | | | 이동시간수당 4 | |
| 일반 5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6 | 3 |
| | | | 이동시간수당 3 | |

2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 권역 | 지역 구분 | 지급 여부 |
|-----|--|-------|
| 1권역 | 울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 미지급 |
| 2권역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제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 지급 |

- 주)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 강의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 주)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를 의미하며,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364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 변경 및 삭제

다.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라.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마.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5조)

바. 평가단원 교육·훈련 확대(안 제6조)

사.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관련 정보 사전 알림(안 제7조)

3. 근거법령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6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4,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 변경 및 삭제

다.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라.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마.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5조)

바. 평가단원 교육·훈련 확대(안 제6조)

사.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관련 정보 사전 알림(안 제7조)

3. 관계법령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6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3월중

바. 입법예고 : 2023. 3. 9. ~ 3. 29.(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이하 “평가단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등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별지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사 진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52-241-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⑦ 생략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 - 367호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에 있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 위원회의 역할중복을 일원화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대행
- 「동 지역위원회」를 「지역회의」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 기능 강화
-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 요인으로,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주민제안사업 발굴, 선정)을 주민자치회가 대행(안 제19조)
- 나.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9조, 제21조, 제29조)
 - (당초) 동 지역위원회 → (변경) 지역회의
- 다.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29조)

- (당초) 실제 비용 → (변경) 실비 및 수당

라.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회의 기능 및 주민총회 안건 추가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3층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52-241-7114, 팩스번호 : 052-241-710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 |
|---|--|-----------|--|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전화 번호 | |
| | 주 소 | |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 | |
| 2023년 월 일 | | | |
| 제출자 | | (서명 또는 인)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 |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설치 및 구성)”을 “(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위원회”를 각각 “지역회의”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역위원회”를 각각 “지역회의”로 하고, 같은 항 중 “실제 비용”을 “실비 및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마을축제”를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등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p> <p>1. (생략)</p> <p>2. 동 <u>주민자치위원회</u>가 추천하는 사람</p> <p>3. (생략)</p> <p>④ (생략)</p> <p>제3장 <u>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u></p> |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주민자치회</u>-----</p> <p>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장 <u>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u></p> |
| <p>제19조(<u>설치 및 구성</u>) ① 동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u>동 지역위원회</u>(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u>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지역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u></p> | <p>제19조(<u>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u>) ① <u>구청장</u>----- ----- <u>지역회의</u>(이하 “지역회의”라 한다)-----</p> <p>1. -----</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u>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u>」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p> <p><삭 제></p>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 1.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2.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 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삭 제>

⑥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삭 제>

- 1. 지역위원회 위원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2. 제8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임기)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21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22조(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위원회 및 동 지역토론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회의) ① 지역위원회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토론회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지역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지역토론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
-----.

- 1. ~ 3. (현행과 같음)
- 4. ----- 지역회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⑤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의 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 다.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조정회의는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 ⑦ (생 략)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 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및 지역위원회 운영과 주 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 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위원회 및 예산 교 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 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삭 제>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
----- 국장-----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지역회의-----

② -----
----- 지역회의-----

③ -----
----- 지역회의-----

----- 실비 및 수당-----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 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3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8개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안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 (변경) 주민자치회
- 나.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3층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52-241-7114, 팩스번호 : 052-241-710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 |
|--|---|-----------|--|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전화 번호 | |
| | 주 소 | |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 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 | |
| 2023년 월 일 | | | |
| 제출자 | | (서명 또는 인)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洞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3회에 한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를”을 “사람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 |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
| 주 소 | | | |
| 직 장 및 전 화 번 호 | 직장명: | 직위: | |
| | ☎ 직장 : | 주택 : | 휴대폰 : |
| E-mail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 | |
| 주 요 경 력 | | | |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 | |
| | 제1희망 | 제2희망 | 제3희망 |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복구인 신청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 |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
| 주 소 | | | |
| 신 청 분 야 | 동 주민자치회 추천(), 시민·사회·기능단체 등 추천() | | |
| | 거주지 동명 | | |
| | 추 천 단 체 | | |
| 직 장 및 전 화 번 호 | 직장명: | | 직위: |
| | ☎ 직장 : | 자택 : | 휴대폰 : |
| E-mail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 | |
| 주 요 경 력 | | | |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 | |
| | 제1희망 | 제2희망 | 제3희망 |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북구인 신청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회장(○○단체·기관의 장)-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모집인원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洞 주민자치위원회</u> 추천 : 16명</p> <p>3. (생 략)</p> <p>② ~ ③ (생 략)</p> | <p>제3조(모집인원 등) ① -----</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동 주민자치회</u> -----</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제4조(모집홍보) ① (생 략)</p> <p>② 설명·홍보 등은 동별 또는 구 전체를 <u>수 개</u>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p> | <p>제4조(모집홍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여러 개</u> -----</p> <p>-----</p> |
| <p>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u>자</u>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선정기준에 <u>의하되</u>, 신청인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p> | <p>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p> <p>----- <u>사람은</u> -----</p> <p>-----</p> <p>-----</p> <p>-----</p> <p>② -----</p> <p>----- <u>따르되</u> -----</p> <p>-----</p> <p>-----</p> |
| <p>제9조(회의 중 발언) ① ~ ③ (생 략)</p> <p>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p> | <p>제9조(회의 중 발언)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세</u></p> |

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1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②(생략)

③ 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방청 등) ① ~ ③ (생략)

④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략)

⑦ 위원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차례만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3조(방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람-----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사람-----
----- .

신·구조문(별지)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지 제1호서식]</p> <p>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명</td> <td colspan="3"></td> </tr> <tr> <td>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학 력</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직장 및 전화번호</td> <td colspan="2">직장명:</td> <td>직위:</td> </tr> <tr> <td>☎ 직장 :</td> <td>주택 :</td> <td>휴대폰 :</td> </tr> <tr> <td>E-mail</td> <td colspan="3">※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td> </tr> <tr> <td>주요경력</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참여희망 분과위원회</td> <td colspan="3">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회망부터 제3회망까지 반드시 기재)</td> </tr> <tr> <td>제1회망</td> <td>제2회망</td> <td>제3회망</td> </tr> </table> <p>※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북구인 <u>신청자인</u>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 주소 | | | | 직장 및 전화번호 | 직장명: | | 직위: | ☎ 직장 : | 주택 : | 휴대폰 : | E-mail |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 | | 주요경력 | | |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회망부터 제3회망까지 반드시 기재) | | | 제1회망 | 제2회망 | 제3회망 | <p>[별지 제1호서식]</p> <p>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명</td> <td colspan="3"></td> </tr> <tr> <td>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학 력</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직장 및 전화번호</td> <td colspan="2">직장명:</td> <td>직위:</td> </tr> <tr> <td>☎ 직장 :</td> <td>주택 :</td> <td>휴대폰 :</td> </tr> <tr> <td>E-mail</td> <td colspan="3">※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td> </tr> <tr> <td>주요경력</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참여희망 분과위원회</td> <td colspan="3">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회망부터 제3회망까지 반드시 기재)</td> </tr> <tr> <td>제1회망</td> <td>제2회망</td> <td>제3회망</td> </tr> </table> <p>※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북구인 <u>신청자의</u>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 주소 | | | | 직장 및 전화번호 | 직장명: | | 직위: | ☎ 직장 : | 주택 : | 휴대폰 : | E-mail |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 | | 주요경력 | | |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회망부터 제3회망까지 반드시 기재) | | | 제1회망 | 제2회망 | 제3회망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장 및 전화번호 | 직장명: |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장 : | 주택 : | 휴대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mail |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회망부터 제3회망까지 반드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회망 | 제2회망 | 제3회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장 및 전화번호 | 직장명: |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장 : | 주택 : | 휴대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mail |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회망부터 제3회망까지 반드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회망 | 제2회망 | 제3회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13. 5. 24>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371호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우리 구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나. 위원회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제4호)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9조)

3. 관계법령

-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2) 전화번호 : 052)241-7713,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 |
|------------------|--|--|------|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 -----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
|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 제5조(위원의 해촉)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생략)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두 차례만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 ⑤ (생략)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차서운(241-7713)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3 - 387호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공고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아래와 같이 선발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I.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 방향

○ 목적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 추진 방향

- 추가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후계농을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Ⅱ. 20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개요

1. 지원 자격 및 요건

-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1)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 (2)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4)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5)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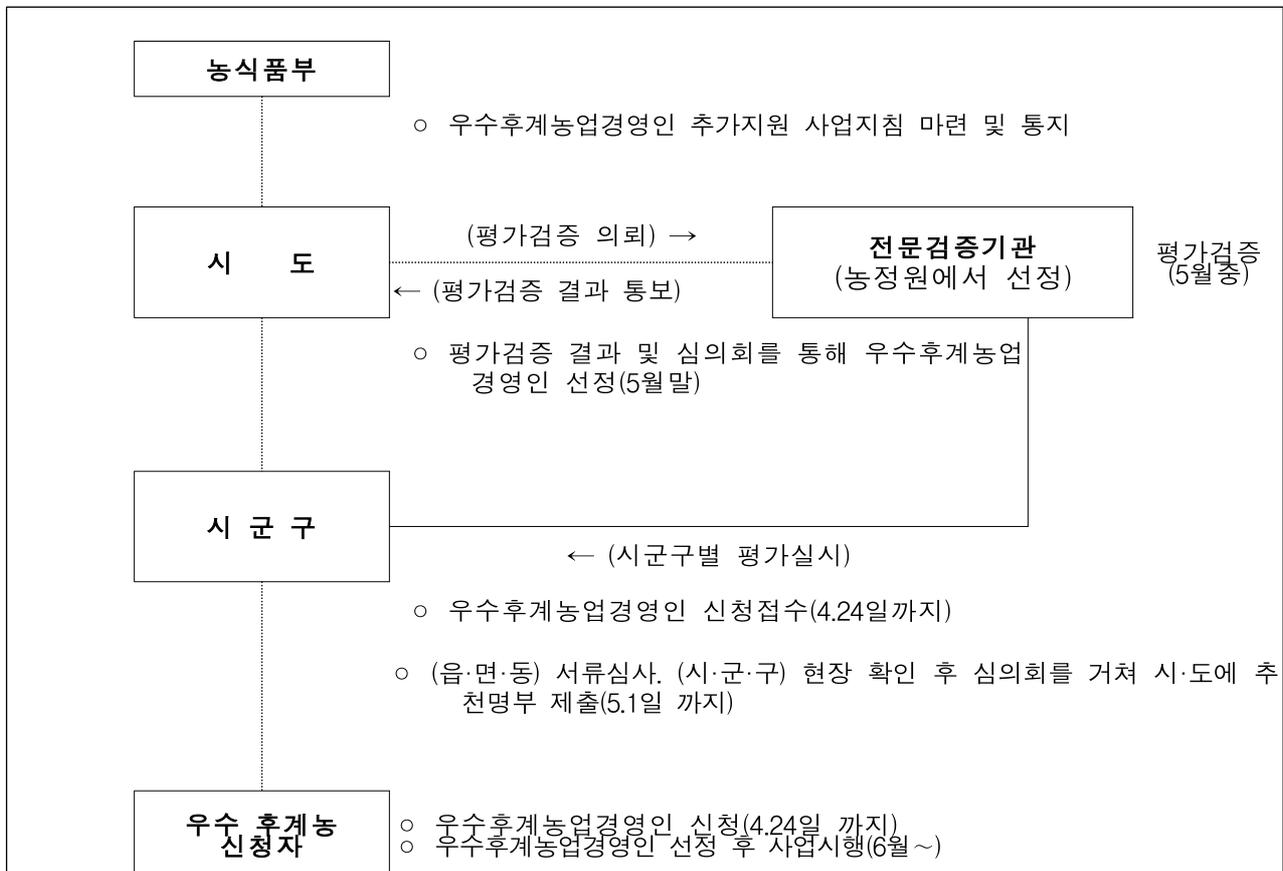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2. 선발 절차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① 농식품부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3.3월) →
-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23.4.3~'23.4.24) →
- ③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5.1) →
- ④ 시·도 : 심사의뢰(5.11) →
- ⑤ 전문검증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5.12~5.23) →
- ⑥ 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 및 결과보고(5.29) →
- ⑦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6월~)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23.4.24일까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 비 서 류 >

- 1.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2.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 3.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4.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5.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판단(별지 제9호 서식)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2)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3)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 (1)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2) (농한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제13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대상자는 취업 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3) (상시)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할 경우 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제13호 서식)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 상시 농외근로 인정 활동 >**
- ◇ 농업 관련 근로활동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단,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
 - ◇ 지역사회 기여활동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중기부),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식품부)를 통한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

6)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7)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5)단서의 취업 및 6)단서의 사업자 포함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지급제외 대상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3호 농지취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8)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2024.12.31.까지)에 사업계획(변

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9)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취소 가능

10)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된 자로서 관련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11)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500억원(연)

3) 지원인원 : 전국단위 500명

4) 신청기한 : 2024.12.31.까지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5)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임차보증금은 임차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 기간에 따라 대출 기간 축소 가능

7) 대출금리 : 연 0.5%(고정금리)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1) 사용 용도

① 경종 분야

|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
| 농지 구입 및 임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
| 시설 설치 및 임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
| 기타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택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3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② 축산분야(곤충 포함)

|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시설설치 및 임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
| 기타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억원, 그 외 기타자금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다만 총 기타자금의 대출규모는 최대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3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2) 용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쳐 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②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③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용자(용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 단, 용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④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⑤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명의로 등기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 | | | | | | |
|---|---|-----|---------------|----------|------------------------|---|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 전화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
| | 이메일 | | | | | |
| 청 | 주소 | | | | | |
| | 영농종사경력 | 년 | 영농교육 | | 분야, | 월 주 |
| 자 | 후계농 선정 연도 | 년 | 분야 | 경종·축산 | 대출금액 | 천원 |
| | 사 업 명 | | | 세부 품목 | * 토마토, 감자 등 세부품목 명시 |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 | 농지 이용 계획 | |
| | | | | | 농업진흥지역안 | 지구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지구 |
| | 사업비(단위 : 천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 | 지방비 |
| | | 국고계 | 보조 | 융자 | | |
| 사업 내용별 규모 (㎡, 두수 등) | | | | | | |
|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용 동 의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
| | 1. 수집 및 이용 목적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거주지 주소, 영농 관련 사항, 후계농 관련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개인정보 위탁 제3자 | <p>5.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p> <p>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지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p> <p>나. 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교육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p>다.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거주지 주소, 영농 관련 사항, 후계농 관련 사항</p> <p>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p> <p>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p> |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
| 제공동의 | <p><비영리 농업인 단체></p> <p>가.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p> <p>나. 이용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p> <p>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p> <p>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p> <p>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p> |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 |

| 제출자료 | 제출 체크 |
|---|--------------------------|
|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 <input type="checkbox"/> |
| 2. (필수) 대출신청자료 1부 | <input type="checkbox"/> |
|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금융상담 후 발급) | <input type="checkbox"/> |
| 4.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input type="checkbox"/> |
| 5.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input type="checkbox"/> |
| 6.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7. (해당) 경영규모(소득현황) 확인자료 - 농지대장,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출매입 관리대장, 거래내역서 등 영농규모·소득원 증빙 자료 | <input type="checkbox"/> |
| 8. (해당) 교육 이수증(최근 3년), 컨설팅·코칭관련 실적 증명(최근 3년) | <input type="checkbox"/> |
| 9. (해당) 양성평등 교육 실적증명·부부공동경영협약서(최근 3년) | <input type="checkbox"/> |
| 10. (해당) 자조금단체 가입을 증명하는 납부실적 (사업신청일 현재) | <input type="checkbox"/> |
| 11. (해당) 재해보험가입증명 (사업신청일 현재) | <input type="checkbox"/> |
| 12. (해당) 공익/비영리단체 회비납부내역 또는 영농봉사활동 실적 증명(최근 5년) | <input type="checkbox"/> |
| 13. (해당) 후계농업경영인단체 추천서 (최근 5년) | <input type="checkbox"/> |
| 14. (해당) 표창/상장 (시장·군수급 이상) | <input type="checkbox"/> |
| 15. (해당) 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 (최근 5년) | <input type="checkbox"/> |
| 16. (해당)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 (최근 5년) | <input type="checkbox"/> |
| 13.(해당) 연간 영농계획서 (최근 5년) - 연간일정표, 판매 계획 등이 포함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 <input type="checkbox"/> |
| 14.(해당)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최근 5년) - 전산/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시 프로그램명(웹주소) 및 ID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 <input type="checkbox"/> |
| 15.(해당)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 HACCP 인증 | <input type="checkbox"/> |
| 16.(해당)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input type="checkbox"/> |

※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영농계획서 및 영농일지·경영장부, 회계 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 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3년: 2020년부터, 최근 5년 : 2018년부터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I. 현황

1. 일반현황

| | | | | | | | |
|-------------|------|------------------|--------------------------------|-------|---------|---------|--|
| 경영주인 농업인 | 성명 | | 농장명 | | 생년월일 | | |
| | | | | | 성 별 | | |
| | 주소 |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 | | | |
| | | 실제 거주지 | 마을 이름: | | | | |
| | | | (-)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
| | | (리·통) | | (번지) | | | |
| | | 마을 이름: | | | | | |
| | 전화번호 | | 휴 대 전 화 | | | | |
| | 팩스번호 | | 전 자 우 편 | | | | |

2. 농작물 생산

| 일 련 번 호 | 농지소재지 | | | | | 지목 | | 경영형 태 (자경· 임차) | 농지면적(m ²) | | | | 재배 품목 | 재배면적 (m ²) | | 실제 수확면 적 (m ²) | 수 탁 |
|------------------|--------|-------------|--------|--------|--------|--------|--------|-------------------------|-----------------------|----------|-----|----|----------|---------------------------|----|-------------------------------------|--------|
| | 시 도 | 시 군 구 | 읍 면 | 리 동 | 지 번 | 공 부 | 실 제 | | 공부 상 | 실제 관리 | 미이용 | | | 노지 | 시설 | | |
| | | | | | | | | | | | 휴경 | 폐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 | | | | | | |
|-----------------------------|-----|-----|-------|-------|-------|------|
| 시설현황 (m ² /동) | 창고 | 온실 | 비닐하우스 | 버섯재배사 | 저온저장고 | 가공시설 |
| | 퇴비사 | 육묘장 | | | | |
| | | | | | | |

4. 농기자재 현황

| | | | | | | | |
|-------------|-------|-----|-----|-------|-----------|-----|------------|
| 농기자재 (대) | 트랙터 | 경운기 | 이앙기 | 콤바인 | 관리기 | 건조기 | 선별기 |
| | 차량 | 컴퓨터 | SS기 | 비료살포기 | 집초기 | 파종기 | TMR 배합기 |
| | 스키드로더 | 방제기 | 랩핑기 | 포크레인 | 액비 제조기 | | |
| | | | | | | | |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 일련 번호 |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 | | | | | | 용도 | 소유 여부 | 가축 종류 | 경영 형태 (자영·수탁) | 축사 면적(m ²) |
|----------|-------------|---------|----|----|----|----|--------------------------------|----|----------|----------|------------------|---------------------------|
| | 시도 | 시군 구 | 읍면 | 리동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m ²) | | | | | |
| | | | | | | | | | | | | |

6. 가축 사육규모

| 구분 | 사육 마릿수 | 지난해 출하 마릿수 | | 평균 납유량(kℓ) |
|-----|-----------|--------------------|--------------------|---------------|
| | | 성축(成畜) (7개월 이상) | 자축(仔畜) (7개월 미만) | |
| 한 우 | 비육우 | | | |
| | 번식우 | | | |
| | 소계 | | | |
| 육 우 | | | | |
| 젖 소 | | | | |

| 구분 | 사육 마릿수 | 지난해 출하 마릿수 | | 구분 | 사육 마릿수 | | |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 | |
|----|-----------|-------------------|-------------------|----|-------------|-----------|------------|-----------------|------------|----|
| | | 성돈 (2개월 이상) | 자돈 (2개월 미만) | | 원종 (GPS) | 종 (PS) | 실용 (일반) | 종 (PS) | 실용 (일반) | |
| 돼지 | 양돈업 | | | 닭 | 중계업 | | | 천개 | 천개 | |
| | | | | | 부화업 | | | 천수 | 천수 | |
| | 중돈업 | | | | 산란계 | | | | 천개 | 천수 |
| | | | | | 육용계 | | | | | kg |
| | | | | 오리 | 중오리업 | | | 천개 | 천개 | |
| | | | | | 부화업 | | | 천수 | 천수 | |
| | | | | | 오리 | | | | kg | |

| 구분 | 사육 마릿수 | 구분 | 사육 마릿수 |
|----------|--------|-----|--------|
| 기타 가축 | 산양(염소) | () | |
| | 면양 | () | |
| | 꿀벌(군) | () | |
| | 토끼 | () | |
| | 사슴 | () |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7.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지번 | 면적(m ²) | 총사업비 (천 원) | 정부 보조금 (천 원) | 정부 용자금 (천 원) |
|---------------|----|---------------------|---------------|-----------------|-----------------|
| | | | | | |
| | | | | | |

8.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 2019 | 2020 | 2021 |
|-------|------|------|------|
| 총 소득액 | | | |

* [별첨]경영규모(소득현황)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입매출관리대장 등 규모·소득 자료 등

II. 사업계획

1. 사업명 :

2. 사업추진 방향

① 자금 조달계획

○

*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② 사업비 투자계획

| 세 부 사 업 명 | 단위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천 원) | | | | |
|--------------|----|----|-----|------------|-----------|-----|----|-----|
| | | | | 계 | 우수농 용자 | 자부담 | 국고 | 지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③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세부사업명 | 1년차 | | | | 2년차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④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 작목명 | 현 재 | | | | 사업비 투자(준공)후 | | | |
|-----|------------------------|-----------|---------------|----------|------------------------|-----------|---------------|----------|
| | 재배면적 (m ²) | 사육두수 (마리) | 연 간 판매수입 (천원) | 경영비 (천원) | 재배면적 (m ²) | 사육두수 (마리) | 연 간 판매수입 (천원) | 경영비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목명 : (예시) 수도작, 장미, 한우, 돼지 등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3. 중장기 발전계획

① 사업계획

- 추진목표

※ 추진목표를 상세하게 작성

- 추진전략

※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세부 내용 | | | | | |
| | | | | | |

② 수지전망

(단위 : 천원)

| 구분 | 목표 및 전망 |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매출액(조수입) | | | | | |
| 경영비 | | | | | |

4. 사업의 기대 효과

○

Ⅲ. 경영(활동) 현황

1. 교육훈련

① 교육 이수 실적 및 컨설팅·코칭 실적(최근 3년 이내)

| 순번 | 운영기관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컨설팅·코칭기간) | 교육시간 |
|-----|-------|-------|--------------------|------|
| 1 | | | ~ | |
| 2 | | | ~ | |
| ... | | | | |

* [별첨] 교육이수증(수료증), 컨설팅·코칭 관련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양성평등 교육 이수 실적 및 부부공동경영협약을 체결 여부(최근 3년 이내)

| 순번 | 확인내용 | 응답 |
|----|--|---|
| 1 | 양성평등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부공동경영협약을 체결 하였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별첨] 교육이수증(양성평등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시간표 포함), 부부공동경영협약서 사본

2. 경영안정화 및 경영관리

① 농정참여

| 순번 | 확인내용 | 응답 |
|----|---|---|
| 1 | 최근 5개년 내에 시·군의 공익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가입(회비납부)하여 활동하거나, 영농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2 |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품목의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가? (자조금 품목인 경우)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3 |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품목의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4 | 농정시책관련 표창·상장(시장·군수급 이상) 실적이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5 | 후계농업경영인단체 추천을 받았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별첨] 단체 가입 및 영농봉사 활동 내역, 단체 추천서, 자조금 납부확인서, 재해보험가입 증서, 공익단체활동, 표창·상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농산물 판로

| 순번 | 확인내용 | 응답 |
|----|--|---|
| 1 | 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의 공동브랜드 출하실적이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
| 2 |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이 있는가? (공동브랜드 출하실적 없는 경우) |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

* [별첨] 거래명세서 등 출하(거래)실적을 확인 수 있는 자료

☞ 출하실적확인서에 공동브랜드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출하(거래)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③ 경영관리

| 순번 | 확인내용 | 응답 |
|----|------------------------------------|---|
| 1 | 연간 영농계획서(연간일정표, 판매계획 등)를 작성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
| 2 |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4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없음 |
| 3 |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별첨] 영농계획서 사본,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사본(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웹주소, 가입 ID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함

☞ 연간 6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인정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장여부를 판단함 (기록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영농기술 및 생산물 안정성

① 영농기술

| 순번 | 확인내용 | 응답 |
|----|----------------------------|---|
| 1 | 생산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인증 <input type="checkbox"/> 우수농산물 인증(GAP) <input type="checkbox"/> HACCP인증 <input type="checkbox"/> 없음 |
| 2 | 농업 및 생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별첨] 인증서 및 자격증 사본

② 생산물 안전성

| 순번 | 확인내용 | 응답 |
|----|---|---|
| 1 | 최근 5개년 내에 가축질병(구제역, AI)이 발생(확진)된 적이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2 | 최근 5개년 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정성 조사에 단속된 적이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생산물 안전성을 허위기재한 경우,

- 사업심사(검증)과정에서 확인된 때 :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확인된 때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3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문화센터가 추가 건립(송정생활문화센터)되어 2023. 5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송정생활문화센터 위치 추가(안 제2조)

- 송정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일부 개정(안 제8조)

- (당초) 세 자녀이상 가정의 세대원
- (변경)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 시설사용료 중 시설공간 명칭 변경(안 별표)

3.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3층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52-241-7332, 팩스번호 : 052-241-733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 |
|---|--|-----------|--|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전화 번호 | |
| | 주 소 | |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 | |
| 2023년 월 일 | | | |
| 제출자 | | (서명 또는 인)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문화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위치)”를“(명칭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치는 울산광역시 복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에 둔다”를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복구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복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2. 송정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복구 화산로 89(화봉동)

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세 자녀이상 가정의 세대원”을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음악연습실 <u>댄스연습실</u> | 1회, 2시간 | 10,000원 |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2. 강좌 수강료

| 기준 | 수강료 | 비고 |
|--------------|---------|----|
| 강좌당(1명, 1분기) | 30,000원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에 둔다.</p> <p><신 설></p> | <p>제2조(명칭 및 위치) ----- ----- ----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북구생활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2. 송정생활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p> |
| <p>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생 략)</p> <p>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u>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 | <p>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p> |
| <p>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2. (생 략)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 ~ 6. (생 략) 7. <u>세 자녀이상 가정의 세대원</u> 8. (생 략)</p> | <p>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100분의 50----- -. 1. · 2. (현행과 같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 6. (현행과 같음) 7. 「<u>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u>」에 따른 다자녀가정 8. (현행과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p>9. 만65세 이상 노인 10. · 11. (생 략)</p> <p>제12조(계약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u>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u></p> <p>② · ③ (생 략)</p> <p>제14조(지원) ① (생 략)</p> <p>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u>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u>」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u>」, 「<u>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u>」를 준용한다.</p> <p>[별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p> <p>1. 시설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 용 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음악연습실 <u>다목적실</u></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 2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td> </tr> </tbody> </table>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음악연습실 <u>다목적실</u> | 1회, 2시간 | 10,000원 |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p>9. <u>65세</u> ----- 10. · 11. (현행과 같음)</p> <p>제12조(계약기간 등) ① ----- ----- ----- <u>한</u> <u>차례만</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p> <p>제18조(준용) ----- -----「<u>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 -----.</p> <p>[별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p> <p>1. 시설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 용 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음악연습실 <u>댄스연습실</u></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 2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td> </tr> </tbody> </table>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음악연습실 <u>댄스연습실</u> | 1회, 2시간 | 10,000원 |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 | | | | | | | | | | |
| 음악연습실 <u>다목적실</u> | 1회, 2시간 | 10,000원 |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 | | | | | | | | | | | | |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 | | | | | | | | | | |
| 음악연습실 <u>댄스연습실</u> | 1회, 2시간 | 10,000원 |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 | | | | | | | | | | | | |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